

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개월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 (운영주체)	신청단위 [] 지자체, [] 법인, [] 단체		
	사업장명칭	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성명		참여 농가 수
	주소 (위치 요약		

신청내용	신청구분 [] 최초 인증 신청, [] 갱신 신청		
	인증구분 [] 농산물 직매장 [] 농산물 직거래 장터 []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[]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		
	사업장 소재지		
	신청면적(㎡)		
	주요품목		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
신청인 생년월일: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→

접 수

→

심 사

→

인 증

→

인증서 발급

신청인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